

외국환거래 상품설명서

본인은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과 외국환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환 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고객확인 : 20 . . (서명/인)

이 설명서는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계약은 대출계약정서(기업용),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이 적용되며 그 외에도 외국환거래약정서가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는 약관이,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

- 상품명: 매입외환, 외화지급보증
 - 매입외환: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따른 환어음 또는 운송서류 등을 은행이 매입하여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거래
 - 신용장 방식: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운송서류 등을 매입하는 거래
 - 무신용장 방식(D/P, D/A, CAD, COD 등): 수출계약서에 의한 환어음 또는 운송서류 등을 매입하는 거래
 - 수출대금채권(O/A)방식: 수출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거래
- 외화지급보증
 - 수입신용장 발행: 은행이 수입화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를 발행하는 거래
 - 보증신용장(기타 외화지급보증서 등) 발행: 수익자에 대하여 고객의 채무(계약) 불이행시 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를 발행하는 거래

2 외국환거래 관련 비용

- 환가료: 외국환거래에서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라 이자조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기간에 따라 환가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일람불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
[매입금액 x 매매기준율 x 매입일의 일람불 환가료율(기준금리 + Spread) x 일수/해당통화 기준일수]
- 연지급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
[매입금액 x 매매기준율 x 매입일의 기간별 환가료율(기간별 기준금리+ Spread) x 기간일수/해당통화 기준일수]
- 지급보증료: 수입신용장 발행·인수 또는 기타 외화지급보증 시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
 - 발행시: 발행수수료
[개설금액 x 매매기준율 x 발행수수료율(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) x 기간일수/해당통화 기준일수]
 - 인수시: 인수수수료
[인수금액 x 매매기준율 x 인수수수료율(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) x 기간일수/해당통화 기준일수]
 - 기타 지급보증: 기타 지급보증수수료
[보증기간 x 매매기준율 x 보증요율(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) x 기간일수/해당통화 기준일수]

- 외국환거래 관련 환가료 등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고객의 신용등급, 담보 유무 및 기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3 수수료 및 부대비용

- 취급수수료
-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: (건당 _____ 원)
- 부대비용
 - 우편료: 우편도착 국가에 따라 차등 적용
 - 전신료: 거래 업무 또는 전신문 분량에 따라 차등 적용

4 환가료 등 납입방법

- 외국환거래시 선취를 원칙으로 합니다.

5 외국환거래 상환방법

- 건별 만기일 또는 예정대체일에 일시 상환 (단, 보증신용장 등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상환).
- 기타 상환방법은 외국환거래약정서 참조

6 유의사항

- 외국환거래의 제한
 - 당행의 연체 대출금 (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) 보유자,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,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외국환거래를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
 - 아래의 경우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합니다.
 - 외국환거래 상환방법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대외에서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
 - 외국환거래 상환방법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
 - 환가료 및 수수료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
 - 외국환거래 관련비용(환가료, 지급보증료, 매입이자) 및 수수료 등은 상담일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기타

※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, 고객센터 (02)3788-3951 로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